

기록물의 활용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김 정 하*

I. 서론	IV. 기록물 역사연구를 위한 사료
II. 기록물의 정의	V. 문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III. 기록물의 활용	VI. 결론

I. 들어가는 말

현존하는 모든 역사기록물은 작게는 생산당시의 구체적인 의도와 내용 및 형식의 가치를 반영하며, 크게는 인류의 기록문화유산을 구성한다. 이는, 비록 생산당시의 의도가 먼 훗날에까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귀중한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영구보존의 사명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같은 논리에서 오늘날과 미래에 생산될 모든 문서들에 대한 후손의 태도 역시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오늘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문서는 어떤 시공의 개념을 적용하는가와 접근방향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다. 그리고 복수가치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접근도 다각도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문서나 문서들이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활용의 유형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세가지 형태의 열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학문적인 활용은 주로 역사가의 사료를 암시하면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 기록관리학 전공

내부적으로는 언급된 사실, 생산주체 그리고 기관의 제도발전과 그 흔적에 반영된 기록물의 유기적 관계로 구분된다. 아울러 이러한 세분은 지난 세월 학문발전의 현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 사실들에 대한 신빙성 검토의 토대 위에 건설된 자금의 문명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활용의 두 번째 유형은 학문연구를 제외한 실질적인 목적의 문서열람으로서, 오늘날 기록보존소에서 그 횡수가 가장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앞서의 두 가지 유형이 비교적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한 기록물 활용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 유형은 구체적인 목적만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막연한 생각 하나로 기록보존소에 출입하는 비전문가의 모험이다.

한편 기록물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노동의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역사가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전문직업인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핵심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증거로서의 정보에 대한 비전문가의 문의도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그럼 어떤 연유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각각의 유형은 열람 대상으로서의 기록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좀더 근원적으로 살펴볼 때, 세분화된 유형들에 대한 오늘날의 분석은 무엇을 전제로 그 가치를 평가 받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기록물의 정의를 전제로, 이러한 일련의 의문들에 대한 답변에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결론에 대한 열망에 앞서 기록물에 대한 각양각색의 접근과 활용의 근저에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개진하려고 한다.

아울러 본인은 이 논문에서 기록물의 활용과 그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언급에 앞서 문서에 대한 몇 가지의 관점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드러난 정도 이상으로 더 크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II. 기록물의 정의

기록물은 그 내부의 문서들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전체이다.¹⁾ ‘문서

(documento)'라는 용어는 그 주요한 의미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전달하고 그 정확성과 양식을 보장하는 모든 수단이며 특히 기록으로 구체화된 법적 행위'를 나타낸다. 또한 문서는 "주어진 환경이나 시기 또는 문명권에 속하면서 이를 대변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며 알도록 해주는 모든 부류의 증언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위한 수단, 열람수단, 조사를 위한 도구 또는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보조로서²⁾ 원본이나 사본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기도 하다"³⁾

이러한 정의는 이탈리아어 대사전(Grande dizionario della lingua italiana)에 따르면⁴⁾ 기록보존소의 관리 대상인 문서들에 해당한다. 다만 첫 번째 인용문은 고 문서학과 기록관리학 연구의 대상을 나타내는 특별한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다양한 성격의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자료로서의 문서와 기록물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문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물을 가리킨다. 첫째는 사진, 그림, 지도, 디스크, 테이프 등인 만큼, 기록된 문서들의 기록물 내부에서 첨부 또는 증거자료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문서들이 그 성격에 따라 국립기록보존소나 다른 기록관리기관 또는 다른 전문화된 기록보존소에 보관되는 기록물이나 특별한 시리즈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문서는 그 재료가 양피지, 종이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기록관리학의 대상

-
- 1) 기록물을 나타내는 'archives'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존장소로서의 기록보존소(Archives)와 기록물 그 자체(archives)가 그것이다. 또한 'archives'에 대한 정의 역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고대 로마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의 정의들에 대해서는 Elio Lodolini, *Archivistica, Principi e problemi*, Milano: Franco Angeli, 1998, pp. 161~170; Giorgio Cencetti, "Gli archivi dell'antica Roma nella et a repubblicana", *Archivi*, s. II, a. VII, 1940, pp. 7~47; Franco Calasso, *Lezioni di storia del diritto italiano. Gli ordinamenti giuridici del Rinascimento*, Milano: Giuffrè, 1948, pp. 255~256, 그리고 261 참고 둘째 18세기 후반 이후에 성립된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는 Philipp Wilhelm Ludwig Fladt, *Anleitung zur registraturwissenschaft und von Registratoribus*, Frankfurt und Leipzig, 1764; Antonio Panella, "Archivisti italiani: Francesco Bonaini", *Notizie degli Archivi di Stato*, II, n. 3, 7-9, 1942, pp. 163~165 Arnando D'Addario, "Principi e metodi dell'inventariazione e archivistica fra XVII e XIX secolo", *Archivia Ecclesiae*, anni XXVI-XXVII, Citta del Vaticano, 1983-1984, pp. 29~48; Ministero dell'Interno, *Gli Archivi di Stato italiani*, Bologna: Zanichelli, 1944, pp. VI~VII.
- 2) 도표문서, 성상, 사진, 시청각 자료 등을 의미한다.
- 3) 이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Paola Carucci, *Le Fonti archivistiche: Ordinamento e Conservazione*, milano: La Nuova Italia Scientifica, p. 25..
- 4) S. Battaglia, *Grande dizionario della lingua italiana*, Torino: UTET, 1971, IV.,

영역에 속한다. 또한 기록보존소 기록물의 질(quality)은 재료의 성격이 아닌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오히려 모든 사회주체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또한 구전증언은 한 기관이 수행한 사회학적인 연구에 동원되거나 역사가의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문서들에 포함될 때, 비로소 기록물의 범주에 속한다.

III. 기록물의 활용

1. 기록물의 학문적 활용: 활용이 쉽지 않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문서들

오늘날에 조차 “기록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으로 기록관리전문가(Archivist)와 연구자들은 기록물과 이들이 보관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물을 먼지더미의 무가치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록물을 자신의 사적인 권리나 노동관계 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우발적인 필요상’에 의해 접하게 되는 ‘신비한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법적인 기대감이 항상 만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이탈리아는 기록물 관리 기관들을 중심으로 기록물에 대한 새로운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전문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문서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구성된 열람인들의 규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록보존소(Archives)는 박물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기록물은 예술작품이나 서책들과는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록물에 대한 특별한 유형의 활용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가나 작가의 창작을 위한 내적인 동기 또는 창작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배제할 경우, 작품은 완성된 직후부터 하나의 예술품을 대변한다. 그리고 참여와 이해의 정도는 다르지만 전문가와 일반대중에 저마다의 색다른 느낌과 사고를 제공한다. 따라서 예술작품이나 서적들은 보고, 읽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활

용의 대상이다. 반면 문서는 기록물에 대한 미래의 활용자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이고 행정적인 목적 또는 이를 생산하고 분류하며 자신의 활동을 위해 스스로의 기억을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부서나 기관의 고유한 기능 및 권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목적에 의해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문서들은 생산된 당시부터 법적행위나 정치 사회적인 사건, 즉 다시 말해 그 기원부터 이미 역사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록 증언이다. 그리고 문서의 생산주체는 자신의 활동(즉 이를 증언하는 문서들)이 의미하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연구기능을 통해서 사건의 증언으로 간주된 문서의 가치를 문화적인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연구자의 개입에 앞서 기록관리 전문가가 이들을 정리하고 목록화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문서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최적의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주체의 전문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항상 복잡한 과정의 중계기능을 필요로 한다. 물론 도서관과 박물관의 물품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적으로 활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전시 단위들간의 논리적이고 필요한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다양한 전시기술에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각각의 문서 또는 기록관리학 단위의 시리즈로 구성된 기록물은 정리되지 않았거나 그 어떤 보조적인 수단들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활용의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기록물이 기록관리학적으로 정리되고 목록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활용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시리즈의 문서들에서 획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일련의 관계망에 투입하고 학문적인 기준이나 조사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정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즉 기록보존소의 열람실을 찾기 이전에 이미 연구대상으로서의 문제를 충분한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말하는 문화적 자극의 가능성으로서 예술품이나 도서들에 비해 보다 복잡적이고 어려운 중재노력을 요구한다.

열람인이 전문가인 경우, 중재노력은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 즉 연구를 위해 기록물을 동원하는 역사가는 문서들에 대한 열람을 통해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

신의 조사에 기초하여 그 결과를 연구서나 전문잡지 등에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홍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물관의 경우, 별다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예술역사가를 반드시 동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전문가나 이에 준하는 전문가의 안내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이곳에서 전개되는 모든 실험적 경험(원본 문서들이 사례로 제시되는 수업이나 젊은 학생들에게 기록물의 형성과정 그리고 기록물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 등)에도 기록관리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다.

중세의 문서들을 강독하고 판독하는 데는 고서체학과 라틴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근대의 문서들에서도 기록관리전문가나 전문연구가는 종종 강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의 서한이나 문서초안의 필사 문서를 판독하는 작업이 반드시 쉽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문서에 담긴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비전문 열람인을 기록보존소의 열람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점을 구성한다. 기록보존소의 열람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범한 능력으로 연구수단이나 방법론 등에 익숙하지 못한 연구자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현존하는 과거기록물의 양은 이들의 정리수준과 목록화된 상태에 따라 연구의 어려움과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의 경우, 기록물의 관리상태는 작업자의 전문성 여부나 적절한 수단의 유무에 따른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알게 모르게 문화정책의 선택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학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대부분이 유일한 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무차별적이고 부주의한 사용에 따라 회복불능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열람인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열람에 의한 문서의 보존과 구조에 대한 불가피한 피해의 정도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열람실의 관리자는 비록 이용자가 전문연구가라고 할지라도 그가 열람한 한 파일의 내부에서 문서들의 질서를 바꾸지 말 것은 물론 연필이나 펜으로 문서의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록물 관리기관도 기록물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활용의 형태가 모색될 수 있다는 사실, 즉 기록관리전문가의 새로운 임무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행위가 이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가치평가는 개념적으로 보존의 영역 내에서 암시되어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와 연구, 연구수단으로 목록집을 작성하는 절차를 동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당 공동체를 배경으로 문서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실질적인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록관리전문가, 즉 기록물을 관리하는 전문가의 올바른 자세는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역할의 초점을 단순한 재산의 문화적 활용에 맞추기보다는 문화재의 활용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장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물에 대한 홍보활동(전시, 다큐멘터리 제작 등)과 교육활동은 기록관리전문가가 기록물과 같이 활용이 결코 쉽지 않은 대상에 사람들이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기록보존소의 다른 기능들과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결과적으로 열람실의 기능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록물의 보존을 개선하기 위한 기록관리전문가의 전통적인 임무(또는 조치들: 기록물 단위들의 정리 작업, 각종 목록집들과 같은 적절한 연구 수단들의 마련, 새로운 기록물의 확보, 마이크로 필름제작, 사본제작, 복사본 발급서비스, 열람시간의 연장 등) 위에 지배적으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열람실의 서비스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문화적 요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기록물의 문화적 기능은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거나 홍보와 교육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강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보다는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수의 대중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내용들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들과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중에게 확신시키는 노력의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서들이 그 기원부터 정리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⁵⁾ 별다른 논리나 의미도 없이 종종 문서들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전시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더 오랜 기간의 보존을 목적으로, 오늘날의 기록물에 대한 집단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시민들에게 제도들의 올바른 기능에 대한 알권리(업무기록물과 행정기록물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포함한다)를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보다 유익한 조치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기록보존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 숨김없이 증명될 것이다.

2. 실질적인 목적의 문서열람

1980년 런던에서 국제기록위원회(Consiglio internazionale degli archivi)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목적에 따른 연구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일련의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당시에 발표된 논문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연구와 활용의 새로운 형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기록물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문제와 문서의 실질적인 활용, 홍보활동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비전문가의 열람실 이용에 관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기록관리전문가인 가르시아(C.A. Garcia Belsunce)는 기록물의 실질적인 활용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용자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⁵⁾ 그가 지적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는 전문가, 공사기관의 관리들, 그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행정 분야, 전문분야 또는 생산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역사연구와는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는 이용자들이었다. 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나 선택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보존소에 출입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수사의 임무를 맡은 경찰이 내부의 재무팀에게 조사대상기관의 기록보존소에서 계약서의 등록에 관한 감독이나 재정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나 또는 한 산업가가 관련규정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정확한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이전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5) L. Sandri, "L'archivistica",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XXVII 1967, p. 412.

6) C. A. Garcia Belsunce, "Uso practico de los archivos", Archivium, XXIX 1982, pp. 77-86.

다. 한 지방기관이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과거 해당지역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 분명하다. 의사들도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전의 유사한 진료기록을 참고한다.

그러나 본 장에서 의도하는 것은 학자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사고체계(forma mentis)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열람의 유형이다. 사실 학자들은 기록물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열람의 매커니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실질적인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과는 다른 시간대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로써 근대의 기술력에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상 이러한 유형의 열람자들은 이 같은 목적의 열람신청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기록관리전문가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가르시아(Garcia Belsunce)는 자신의 논문에서 새로운 유형의 요구가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 보존과 발견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국립기록보존소와 기록물보존에 노력하는 다른 기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관의 업무 및 행정기록보존소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기록물을 최선의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 정리된 상태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은행이나 사기업이 자동화와 근대기술의 모든 이기를 동원하여 독립적인 기록보존소를 조직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지방기관과 공공행정은 스스로의 조직을 근대화하는데 앞장서지는 않는다. 특히 국가행정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기술진보와 보조를 같이하지 않는 법과 규정에 의해 신속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비전문가의 문서열람

1980년,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인 살바토리 프린치페(Salvatori Principe)는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문서를 열람하는 비전문열람자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1978년 한 해에 서유럽, 미국,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학문연구를

위해 기록보존소의 열람실을 빈번하게 출입한 사람들이 캐나다의 65%와 서유럽의 76% 사이에 해당하며 그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적인 동기나 퇴직에 관련된 행정적인 성격의 열람이었다고 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행정적인 목적의 문서열람은 최고 49%에 달하였으며 열람의 동기는 그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학문연구나 행정적인 목적의 열람을 위해 기록보존소의 열람실을 출입한 비전문열람인은 전체의 51%인 반면, 서유럽의 경우에는 34.5%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비전문열람인의 수는 동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 최근 10년 동안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서비스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된 국가의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증가의 폭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양과 질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즉 유럽은 북아메리카에 비해 오래되었으며 활용이 쉽지 않은 많은 양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오래된 기록물의 대부분은 유럽의 여러 기록보존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구전 자료들과 유럽에 비해 그 양이 풍부한 민중전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립기록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하는 기간이 다양하며 그만큼 동시대의 문서들에 대한 열람의 기한과 조건도 다르다. 국가들에 따라 기록보존소의 내부조직도 매우 다른데 그 이유는 법 규정 내부구조, 조직 그리고 경제 수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전문열람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⁸⁾

7) L. Salvatori Principe, "Everyman and archives", *Archivium* XXIX 1982, pp. 135~141.

8) 이탈리아의 경우, 법적인 권리나 가르시아 Garcia Belsunce 가 지적한 유형과는 달리 방법론적으로 학문연구와 유사한 이해관계의 보호를 위한 열람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립기록보존소에 문서를 이관하지 않은 정부기관들의 기록보존소나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관의 기록보존소를 대상으로 학문연구를 위한 열람과 실제적이거나 법적권리와 이해관계의 보호를 위한 열람을 대상으로 통계조사가 불가능하다.

IV. 기록물: 역사연구를 위한 자료

1. 문서(Documentum): 사실에 대한 증언과 해석

각각의 기록물이 형성된 방식들과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겪은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기록물의 구조는 서로 다른 역사기간을 통해서 활동하던 기관들의 기록물들 사이에 존재하던 다양한 관계들과 더불어, 기록관리학의 연구대상을 구성한다.⁹⁾ 그리고 이 학문은 여러 역사연구의 경향들이 자료를 비평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성장하였다.

유럽의 경우 나폴레옹의 개혁은 19세기 전반을 통해 기록물을 일반대중에 공개하는 원칙의 성립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 확립된 기록물의 공개원칙¹⁰⁾을 확대하고 이후 왕정복고시대의 정부들 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¹¹⁾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인문주의 역사연구와 이후 근대역사의 식자들의 공로였다. 정치, 행정적인 목적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규정의 역사가 기록물 그 자체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식자들의 관심은 주로 자료별로 요약될 수 있는 재정리 방식과 목록집의 작성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결같이 문서들을 가능한 쉽게 발견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관심은 자연, 이미 생산된 문서들의 보존을 자극하였으며 생산과정에 있는 기록물을 조직하기 위한 기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당시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고문서학자들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서 역사연구는 17~18세기에 마우리니(Maurini)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장 마빌롱(Jean Mabillon)의 놀라운 업적, 특히

9) 기록관리학이론의 기원과 그 발전에 대해서는 A.D.Addario, *Lezioni di archivistica*, Bari: Adriatica editrice, 1972. pp. 6~48.

10) 프랑스 국민의회(Convenzione nazionale della Repubblica francese: 1794. 6. 25)에서 기록물에 대한 학자들의 자유로운 열람을 결정하였다.

11) Cfr. E.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A*, III, 1940, 108n; Julius Ficker, "La Mostra degli archivi toscani a Vienna nel 1873", *Internationale Ausstellung Zeitung, Beilage der Neuen Freien Presse*, nn. 3209 그리고 3210(1873. 7), trad. it in *Archivio storico italiano*, 3a s., to. XVIII, 1873.

자료에 대한 조사와 자료 편찬을 통해 사실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역사연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던 루도비코 안토니오 무라토리(Ludovico Antonio Muratori)를 통해 당시의 식자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즉 이탈리아에서 독일 학자들의 엄격한 문헌학체계가 높게 평가되고 있던 당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록관리학의 자료들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탈리아 역사 기록보존소(Archivio storico italiano)’가 있었으며, 조국사위원회(Deputazioni di storia patria)는 문서연구에 기초한 지역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들을 출판하기 위해 새로운 학술지들을 창간하였다. 1883년에는 ‘이탈리아 역사연구(Istituto storico italiano)’가 만들어졌고 사료들의 이서와 편찬을 위한 규칙들이 성립되었다. 계속해서 비토리오 휘오리니(Vittorio Fiorini)와 조수아 카르두치(Giosue' Carducci)는 재출판된 무라토리의 ‘Rerum italicarum scriptores’를 감수하였다. 그 이외에도 이 시대의 또 다른 성과로는 외교문서들과 법령집 그리고 법전의 편찬을 지적할 수 있었다. 자료와 문서들의 편찬을 위한 기준들도 더욱 발전하였다. 르네상스 초기에는 문헌에 대한 비평이 특히 진위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문헌학적인 방법론이 정착하면서, 사실들에 대한 확인과 역사연구의 성과들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이상주의적인 비평과 역사의 물질주의적인 개념이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실들의 재구성에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유래한다는 믿음은 기록 문헌들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신빙성에 모든 해석의 차원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는 성향을 유발하였다. 더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프란체스코 보나이니(Francesco Bonaini, 1806-1874)와 같은 일련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문헌들이 그 자체적으로 이미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유추하기에 이르렀다.¹²⁾

12) 프란체스코 보나이니는 기관과 기록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원질서 재구성에 의한 정리원칙을 확립하였으며 그의 주장은 체사레 구아스티(Cesare Guasti, 1822-1889), 살바토레 본지(Salvatore Bongi, 1825-1899), 루치아노 방키(Luciano Banchi, 1837-1888) 등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 피렌체 국립기록보존소와 토스카나 공국(Granducato di Toscana)의 기록관리위원회의 설립에 동기를 제공하였다. 한편 보나이니의 생각은 1869년 3월 23일 당시의 문교부에 보낸 편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어떻게 기록물이 생산되었으며 세기를 거치면서 그 수가 증가하였는

기록 문헌들에 대한 역사가들의 관점은 발생한 사실(현실)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문헌들에 부여된 기능이 역사가들의 이론적 전제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의 관점은 역사연구자가 자신의 다른 모든 자료들과의 관계에서 기록물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어떤 방법론적 기준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이유에 의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에 따르면 “기록물이라 함은 기록문자, 음악기호, 회화, 조각, 건축, 재발견된 기술, 지상의 변형된 사실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발생한 일들, 또는 정치, 도덕, 종교의 기관들 그리고 세기를 거듭하면서 형성되었거나 우리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감성들로 드러날 수 있는 과거의 모든 업적들이다”.¹³⁾ 또한 기록보존소의 기록물과 관련하여 크로체는 “지식경제의 차원에서 증명된 정보들의 중요성은 이들을 잘 수집하고 보호하여 변질과 혼란 그리고 분실을 방지하려는 노력에 올바른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의 중요성이 지닌 한계, 즉 영원성, 결코 진실이라 만든 할 수 없는 정확성은 정보들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할 때에도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역사이며 인간 영혼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라는 의미로 남는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해 줄 뿐이다”.¹⁴⁾ 반면 루치앙 페브르(L. Febvre)는 사물들을 통해서 이들에 얽혀 살았던 인간들을 재발견하려는 의도에서 “역사는 인간의 학문이며 인류과거의 학문이다 사물들과 개념들의 학문이 아니다”¹⁵⁾ 라고 하였다.

가를 생각하면 이들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가장 확실한 기준들을 알 수 있다. 모든 제도는 성립되고 변화하며 존재를 마감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도는 사회변화, 필요, 구체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다른 제도로 변화한다. 사실들에 대한 증언, 연속의 변화들은 문서들에 그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어느 정도의 질서와 명칭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규칙은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그 속에서 변화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사실(fact)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편견은 제외되며, 아울러 이 경우에는 걸치레적인 이론들보다는 역사에 대한 확장된 인식이 더 요긴하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기록물 정리자는 자신의 분야에 필요한 진정한 요인들을 발견한다. 규모가 큰 기록보존소에 들어가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보다는 제도들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한다.”(Antonio Panella, “L’ordinamento storico e l’informazione di un Archivio generale in una relazione inedita di Francesco Bonaini”, Archivi, s.II, aIII, fasc. 1, Roma, 1936, pp.37~39).

13) B. Croce, *La storia come pensiero e come azione*, Bari: Laterza, 1966, p.104

14) Ibid., p. 107

사실 크로체와 페브르의 신념은 실증주의 역사연구에 반동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점과 문헌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들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무엇보다 기록된 문헌들을 통해서 가능하다)은 크로체, 마크 블러크(M. Bloch) 또는 카이(E. H. Carr)와 같이 학파를 달리하는 역사가들의 공통된 도덕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역사가들은 사실들의 재구성을 위해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활용하며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이 항상 현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역사가들은 기록보존소의 사료들이 다른 기록 사료들에 비해 반드시 특권화된 사료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이 상황에서 다른 기록사료는 연대기, Annali, 회고록, 역사기술, 소설이나 신문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자체의 특별한 가치를 초월하여 생산된 시대의 문서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역사가에게 모든 기록사료(사보 F. Chabod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서와 기술을 말한다)는 방법론 차원에서 증명과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록보존소의 문서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장된 해석이 사회에 그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은 이념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대중매체의 이론가들에 의해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이다. 기록보존소의 기록물과 관련하여 역사비평은 문서가 그 자체로 현실에 대한 해석일 뿐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설사 이러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문서에 대한 판독은 그 자체로 역사적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후 시대에 생산된 사료들의 활용 방식들에 폭 넓게 영향을 주었던 중세 사료들에 대한 비평은 문서의 진위성이나 조작성 또는 문서들에서 얻어진 정보들의 진위성이나 조작성을 판단하는 방식들의 발전을 가져왔다. 실제적인 목적에 동원된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이 현실에 대한 부분적인 제시나 조작을 의미할 때에도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득신고는 때로는 해당인의 재산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세입(신고된 내용에 준하는)은 매우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문서에 실제상황에 준하지 않는 자료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상의 가치에 준하여 새로운 선택을 위

15) L. Febvre, *Problemi di metodo storico*, Torino:Einaudi, 1976, pp. 78-79

한 기초로 활용된다면 이 문서는 조작된 현실의 반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법적형식주의, 합법성여부에 관계없는 내적인 동기들과 의지의 표현들간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적인 동기들은 실질적인 것이지만, 의지의 표현들은 우리의 질서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의 관심은 이것이 자신의 연구를 위한 명백한 대상을 구성할 경우에만 형식적인 측면으로 제한된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법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증언하는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동기들, 완성된 행위들의 의도성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구체적인 상황들의 전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증언

기록관리학적으로 정리된 기록물은 생산기관이나 제도의 역사를 반영한다. 즉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은 전승되는 정보들의 경우에만 역사사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을 구성하는 시리즈들간에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서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다양한 정황들, 목적, 실질적인 운영 방식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¹⁶⁾ 기록물은 문서와 기록물을 구분하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고고학의 유적이거나 건물과 동등한 차원에서 과거의 작품이며 유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조와 기능상의 특징들로 인해 학문연구의 대상을 구성한다. 그 이외에도, 제도를 알게 되면 문서들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인들을 확보하게 된다. 사려 깊은 역사학자라면 문서의 저자를 밝혀내는 문제를 제기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역사분야의 여러 저서들은 사료들에 대한 비평적 분석의 전제인 기록물의 정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¹⁷⁾ 고문서학과

16) 기록물에 대한 이상의 기록관리학적인 정의와 관련하여, 아르날도 다다리오(Arnaldo d'Addario) 보나이니의 기록물정리방식을 “단순한 식자의 관심에 의한 결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리즈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드러난 각 문서의 가치를 초월하여 공법과 사법의 제도들(의 행위에 문서들이 기원한다)의 흔적들을 간파하고 생생한 증언을 복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용문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Arnaldo d'Addario, “Archivi ed archivistica in Toscana negli ultimi cento anni”, *Rassegna storica Toscana*, a.I, n.1, 1955, pp. 35~71. 본 인용문은 pp. 38~39에 있음).

고서체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기록관리학을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언급하기 보다는 역사의 보조학문(연구 수단들의 작성)으로 인정할 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공공기관, 사기관의 제도적 발전과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제도들과 제도 자체의 기록물에 반영된 변천 내용들에 대한 역사를 아는데 매우 긴요하다. 정치 제도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두 가지 정확한 방법론에 부합한다,

a) 사료의 확보: 사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정치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분야별 혹은 수량적인 연구를 원하는 사람, 이념적인 성격이 짙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기될 수 있다.

b) 사료의 질(quality):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조사하는 경우, 자료나 정보의 신뢰성, 수집된 목적, 시리즈별로 자료가 얼마나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기관의 결정들에 관련된 사무, 다른 기록물에서 발견된 유사한 자료들과의 상충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생산한 기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기록보존소의) 기록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기간에 활동하던 정부 기관들의 역사를 아는 것 이외에도 어떤 공사기관들이 조사대상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지식도 아울러 필요하다.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공사의 어떤 기관들이 본 주제와 관련된 기능 혹은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도 관찰의 대상이다. 한 부서가 한 가지 사안을 취급하면서 모든 변화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안의 고유한 목적들이 해당부서의 고유한 권한들에 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통 하나의 동일한 문제나 업무는 여러 다른 부서들의 권한에 공통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며 그 대상도 사기관이나 인물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관련된 정보들은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나 다른 기관들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

17) F. Chabod, *Lezioni di metodo storico*, Bari: Laterza, 1969, pp.106~124.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보존소의 사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세에서 오늘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시리즈의 기록물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보통 시기적으로 자치도시의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분적으로 잔존하는 문서들의 현상은 8세기부터(때로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현존하는 수량도 자치도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립기록보존소, 자치도시의 시립기록보존소, 수도원이나 성당의 기록보존소).

중세이후 정부조직의 발전은 교구, 주교구 그리고 재판소를 통해서 동일한 지역에서 고유한 법체제로 활동하던 교회조직의 발전과 평행선의 관계에 있었다. 주민들과 세속권력 또는 교회의 관계이외에도 신도회, 재속사제들과는 구분되는 교단들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과 세속의 목적들을 추구하면서도 일상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종교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권력과 종교적 동기의 상호 복합적인 관계는 수도원, 신도회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세속 및 종교권력과 병행하여 지방의 권력중심지들이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제도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영토를 대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던 독자적인 사법권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권력들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점차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시뇨리아(Signoria) 또는 군주국이 성립하였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으로 봉건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늘날 지방자치라고 부르는 자치도시 시대에 지배체제의 권력을 계승한 자치도시들의 성격과 권한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중앙권력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지방의 행정 및 사법구조가 상주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중앙권력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의 권력 기구들과 중앙의 관료 기구들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던 국가권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공통체(자치도시)의 조직들이 존속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들이 국가의 지방 기구들보다 제한된 사법권을 행사하던 기구들을 모델로 한 조직들을 형성하였다. 한편 지방차원에서는 국가의 전 지역에 공통적인 국가 조직들과 각 지역의 고유한 발전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다양한 지방 조직 기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즉 자치도시들의 사법기구, 조합 그리고 세속단체, 대학 등은 자신의 구성원들을 위해 규정을 재정하고 특권

을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 지역의 주민은 중앙권력이 부과한 법규정과 지방권력이 제정한 보다 특수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국가에 뿐만 아니라 지방 단체들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 위치하면서 점차 사법권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던 국가의 사법기구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경범죄나 지방기구차원에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프랑스 혁명이전에는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의 명백한 구분이 없었다. 많은 사례들에서 행정 분야의 조직이 해당 규정들을 위반한 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종종 지방의 사법권은 공공질서와 그 유지와 관련된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정치 조직들은 범죄수사 및 처벌의 기능을 떠맡기도 하였다. 오직 프랑스 혁명의 개혁을 통해 모든 국가들에서 봉건제도가 철폐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영토를 분할하는 체제가 도입되고 이로부터 국가의 지방기구(행정과 사법기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오늘날의 체제가 유래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납세제도, 특히 직접세의 분할은 토지대장(catasto)의 형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일련의 다양한 의무(군대통과허용, 거처 제공 등) 이외에도 토지를 경작하고 수공업과 어업분야의 관직을 수행하거나 무역활동에 종사하였다. 즉 이들은 매매행위를 하며 이웃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병들고 살인하며 적대행위를 저지르는 등 일련의 합법,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동체로서는 주목할 대상이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법이나 정부기구 혹은 지방자치단체, 교회기구로부터 제한을 받았다(교구는 세례, 결혼, 사망 등 각 교구에서 출생한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였다).

개인들간의 협상관계에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공증인의 존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이들의 전문 활동은 자신의 공증기능을 통해서 거래된 관계 그 자체에 명백한 사실성을 제공하고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를 보존하는 기능을 대변하였다. 법의 영향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넓을수록 그 만큼 사회변동과 정치권력의 전개방식들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통일국가의 정부조직이 생산한 기록물에서는 사회생활에 관한 언급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여러 구심점들을 구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반면에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의 여러 권력중심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법 규정에 입각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의 기록물과 공공기관 및 사기관의 기록물에서 직접적인 증인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회와 종교 조직들의 활동의 경우에는 해당 조직들의 기록물에서 관련증언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활동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여러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증거는 이러한 활동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구조들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사례들은 일찍부터 법적,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던 조합과 단체들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8세기에 매우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당시에 사적이고 자유로운 관계들의 체제는 과학, 문학단체, 클럽과 살롱, 주식과 신문, 학술기관과 연극의 분야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다.

전통이나 관습의 차원에서 수행된 활동들은 직접적인 기록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활동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작성된 문서들에 그 흔적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민사와 형사의 책임에 관한 사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였던 경우에는 사법 기관들과 경찰 조직들의 기록물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층 계급들의 생활여건에 관련된 소식들은 공공기관, 사기관 혹은 종교기관, 즉 지배계급의 승인을 통해 그 흔적이 남는 경우에는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된다. 이것은 문화분야의 증인, 민중전통, 구전자료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기록물을 구성한다. 현대에 근접할수록 노동조합, 사회구호단체, 노동부, 조합은 자신들의 기록물에 하층계급의 기관들이 생산한 문서들을 포함한다. 굳이 문맹주의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립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표기구를 형성할 능력이 없는 사회계층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V. 문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고문서학의 문서

고문서학은 구체적인 형식으로 작성된 법적 사실들이 기록된 증언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특히 근본적으로는 문서의 다양한 형식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학문은 조사대상으로 서유럽의 중세와 인문주의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¹⁸⁾

문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법적인 상황을 발생시키고 수정하거나 소멸시키는 법적행위와 문서, 즉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기억을 유지할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문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역사적으로 행위의 증명적 가치는 행위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문서에 우선한다).

문서들은 전반적인 이해관계의 틀에서 작용하는 군주의 의지에 의해 규정된 관계증언이나 표현, 또는 각 개인의 이해관계나 노력으로 성립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계 즉 법 규정들에 의해 통제된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위의 두 경우에 있어서 율피아노(Ulpiano)의 개념에 따르면 군주에 의한 관계증언은 공법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개인들의 통제된 관계는 사법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공법이 로마의 법에 속하는 것이라면 사법은 각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중세에 공법과 사법을 명확하게 구분하던 경향은 약화되어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며 행위의 법적인 성격도 비록 문서가 공법의 관계증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문서의 작성에 동원된 형식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문서를 그 형태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문서의 저자를 중심으로 공권력이 발행한 것을 공문서, 개인들간에 작성된 것을 사문서로 지칭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세에는 최고권력, 즉 교황과 황제 그리고 왕들을 제외한다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주체의 수를 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외에도 공권력은 사법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현존하는 문서들 중에는 사문서의 형태들로 작성되었으나 공법에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다.

18)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특히 F.Valenti, *Il documento medievale*, Modena: STEM-Mucchi, 1961; C. Paoli, *Diplomatica*, Firenze: Sansoni, 1969(1942년에 재판됨); A. Pratesi, *Genesi e forma del documento medievale*, Roma: Jouvence, 1979.

군주의 의지를 상징하는 문서가 고문서학적인 측면에서 공문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구체적인 형식의 문서들을 작성하는 서기국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비타니(G. Vittani)는 이들을 자신의 저서인 *Elementi di diplomatica*에서 공증인문서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개인들의 의지나 공권력의 표현일 수 있는 사문서는 완료된 법적행위에 대한 기억을 ‘공문서의 서식(또는 형태: *in publicam formam*)’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관리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업의 필경사(*amanuensi*)들이 작성하였다.

또한 증명수단으로서 문서가 가지는 가치와 관련하여 -비록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법적가치가 없는 기록을 공사를 막론한 합법적인 문서와 구분하기 위해 ‘공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한다. 서기국 문서나 공문서의 경우(구체적인 형식에 따라 작성된 후에 군주가 공포한 문서의 의미) 문서를 공포한 권력은 서기국을 매개로 하여 합법성을 보장한다. 사문서의 경우 합법성은 ‘공문서 서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증인 문서는 공문서라고 할 것이며[공증인은 공공관리로서 ‘공문서 서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문서학에서는 대표적인 사문서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기록된 증언이 처음부터 증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는 증인들과 확인을 위해 동원될 수 있었던 인물들의 서명이나 법원의 청원에 의해 부여되었다. 공권력에게 있어서 자신이 행위의 저자이며 동시에 문서화작업의 저자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성은 구체적인 법질서 하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기록증언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기국의 성립에도 동기를 부여하였다(11세기 이후 도처에 작은 규모의 서기국 조직이 성립하였다). 서기국은 문서작성체계와 서명자들과 인장을 확인하는 특별한 방식들을 도입하였다. 반면에 사문서의 경우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문서의 적법성을 보장하였다. 즉, 12세기와 13세기 사이에 공증인제도는 이탈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였으며 이전의 문서 형태들이¹⁹⁾ 공신력, 즉 공증인에

19) ‘*cartha*’는 무엇보다 행위의 주체인 문서저자의 서명으로부터 핵심적인 의미가 유래하는 문서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notitia*’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소식을 제공하는 서술의 형태라는 의미의 문서를 가리킨다. 실제로 발렌티에 따르면, ‘*cartha*’와 ‘*notitia*’(또는 *notitia brevis*,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대적인 증명적 가치를 가진 공문서(*instrumentum publicum*)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형용사 ‘공적인(*publico*)’의 이중적인 의미와 관련해서도 발렌티(F. Valenti)가 고문서학의 입장에서 문서를 구분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공적인 문서라 부르거나 또는 ‘서기국의’ 문서로 부르는 문서는 문서화된 행위를 수행한 공권력 스스로가 공증 수단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우리가 ‘사적인’ 문서, 즉 서기국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는 행위나 문서화의 저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개인 시민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즉 공증에 필요한 수단들을 자신과 권력범주의 밖에서 모색하는 것을 가리킨다”²⁰⁾

행위의 저자와 문서화의 저자를 일치시킬 필요성은 정치, 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²¹⁾ 자치도시와 자치도시의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물들인 공증인의 관계발전에 관한 주제의 핵심은 자치도시가 스스로의 권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법적인 차원의 합법화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증인을 매개로 주변의 모든 권력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합법화(정당화)시킬 필요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구체적인 역사, 제도적인

breve, breve recordationis, memoratorium)의 구분은 로마시대 말기와 롱고바르디족의 시대 초기에 명확하였던 반면 중세에는 그 경계가 많이 희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유형의 문서화 과정이 혼합되어지는 경향이 등장하면서 두 용어 모두 사법의 문서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 20) 중세에 작성된 문서들에서는 *documenta, diplomata*와 *instrumenta notaria* 그리고 *Acta et scripturae* 들을 구분하였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documentum*들을 독일 학자들은 *Urkunden* 으로 프랑스학자들은 *actes*로 불렀으며 공문서와 사문서의 형태에서 주체의 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었다. 프랑스 학자들의 *actes*와 관련하여 *atti*를 *documento*가 아닌 다른 모든 기록들을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고문서학자들은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즉 어떤 학자들은 *atti*가 문서의 작성에 동원되는 준비문서 또는 도구 문서들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documentum*도 단순한 서한들도 아닌 다른 기록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그 이외의 학자들은 *atti*가 서한들도 포함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Vaalenti, op. cit., p. 16 참고)
- 21) 이탈리아의 학자 프라티지(Pratesi)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에 제 3의 부류, 즉 독자적인 서기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서의 기록관들을 공직에 임명하거나 관련 법 규정을 동원하여 문서작성을 의뢰한다”는 방식으로 군소권력이 발행한 준공문서를 첨가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서들은 서기국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문서대리작성인은 저자와 신하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A. Pratesi, op. cit., p. 30).

배경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문서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중세 이탈리아 법학자들의 덕분으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 흔적들은 생산중심지들에서 기록된 서기국 문서들의 발전과 문서의 작성에 필요한 재료들, 기능과 사용을 정의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치도시의 법령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서작성의 체계적인 규칙은 유익한 문서들의 보존을 위한 기준들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중세 전반기에는 공증인과 기록관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보존할 공공장소들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주교구와 다른 종교기관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서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문서집에 각 문서들을 이서하는 전통이 성립하였다. 자치도시 이외에 종교기관들 다른 권력 기관들과 가문들도 법이나 특권 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들을 대문서사본집들에 복사하거나 수집하고 있었다. 물론 개인들간의 권리 법 의무를 증명하는 문서들을 보존해야 할 필요도 함께 등장하였다. 어떤 자치도시들은 공증인들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초안들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증인들은 작성이 완료된 문서들을 문서장부(*quaderni* 또는 *protocolli*)에 약어문의 형태로 이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최종문서로 완성되기에 앞서 작성되는 문서 초안들은 공증인, 상속인 그리고 후임자들에게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치도시의 기록보존소나 공증인 교육기관 또는 공증인협회의 본부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기록물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총체적인 이론에 따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실제적인 목적과 그 성격이 다양한 동기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시에나에서는 이미 13세기 초에 공증인들의 문서초안과 프로토콜(*protocolli*)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관과 공증인 조합의 조합장(*consoli*)들이 사망한 공증인의 문서들을 수령하여 정리하고 보존을 위해 다른 공증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규정들이 마련된 것은 1351년이였다. 이러한 조치는 1348년 흑사병이 확산되면서 다수의 공증인이 사망한 것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당시 사망한 공증인의 문서들은 분실되거나 “후추나 향료상인들에게 물품봉투로 팔리고 있었다”.²²⁾ 그 결과 공증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분실된 기록의 당사자들

22) Ministero per il beni ed ambientali, Archivio di Stato di Siena, L'Archivio notarile(1221-1862), Inventario(G. Catoni, S. Fineschi 감수), PAS(Pubblicazioni degli Archivi di Stato, LXXXVII), Roma 1975, p. 14.

은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2. 기록관리학의 문서

기록관리전문가는 문서라는 용어의 의미를 법이나 고문서학의 영역에서보다 더 방대한 개념으로 수용한다. 특히 법적구속력을 형성하고 수정하거나 소멸시키는 (업무)행위의 근본적이고 형태적인 요인들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정의되어진다. 또한 오늘날에도 행정 문서들, 특히 행정조치(또는 규정)의 경우, 형태는 중요한 요인을 구성한다.

기록관리전문가는 정부기관의 기록물, 즉 (업무)진행절차의 최종순간을 대변하며 외적인 형태상의 중요한 문서들뿐만 아니라,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중간문서(중앙부서와 지방 부서들의 의견교환, 내부용도로 작성된 보고서들, 요약문, 통신문 초안, 첨부 문서들 등)을 관리한다. 그리고 기록물은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두 경우에 있어서, 부서들에서 생산한 문서는 물론 이러한 최종 문서들이 작성되기 이전의 중간과정에서 생산된 중간 문서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우에 따라 공식문서보다 부서나 기관들의 내부용도로 작성된 문서들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한편 문서는 법률 활동에 대한 증명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문서들은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에서는 문서의 합법성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작성된 이후의 시기에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 시민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보냈던 시간이 매우 즐거웠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서한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판에서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서는 작성된 순간에 구체적인 법적 중요성을 획득하며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이후의 시기에 다른 성격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²³⁾

법률적 중요성은 공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부서들의 기록물을 구성하

23) 반파시스트(antifascista) 운동가를 심판한 국가수호특별법정의 선언문은 파시스트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정치범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문서들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부동산관련 문서들 기업이 체결한 계약서, 주식회사문서, 한 공장의 근로자를 위해 조합이 발행한 문서 등과 같은 개인들의 기록물을 구성하는 문서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법률적인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나 공공기관 개인기관 가문이나 개인에 의해 발행된 문서들은 항상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 자료로서나 다른 여러 실용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제는, 비록 연구자들의 희망이 기록물의 보존상태와 방식 그리고 문서들의 공개여부에 관련된 규정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이들이 작성된 날자와 성격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 기록물을 활용하고 연구하려는 의도를 표출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3. 문서와 정보 그리고 정보학

문서에 대한 관심은 문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성격을 부여하는 근본적이고 형식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기관이 (예를 들어 한 가지 업무와 관련하여)수발한 문서들의 상호연결고리들을 찾아낼 경우 기록물의 내부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문서의 근본적이고 형식적인 요인들과 기록물의 내부구조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은 문서기술자들인 고문서학자와 고서체학자의 주요 관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근본적인 변화들을 반영하는 외부 자료들에 대한 연구와 기록물의 구조와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역사 제도상의 진행과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특한 유형의 역사연구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서는 (업무)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내용을 구성하는 특별한 대상의 측면은 물론, 문서가 명확하게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서책, 필름, 노래, 도시계획도면, 도구나 장비는 외적인 분석의 대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면, 자신들이 생산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려될 경우, 문명, 풍속 사회상황에 대한 증언으로도 채

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서들은 귀중한 역사사료라는 사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학문들을 비롯하여 다른 유형의 자료들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도 간주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기록물의 문서들을 통해서 건물이 건설된 시기, 한 사업의 수주와 발주관계, 새로운 관계시설의 도입, 단위체계의 확산지역, 필사본에 대한 저자의 수정작업, 신종어휘나 법 조항들이 적용된 시기와 지역 등을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문서들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문서는 비록 조사나 연구의 차원에서 각각의 문서 그 자체가 거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영역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문서에서 추정된 정보들은 동시대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거나 그 내력을 알 수 있다면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문서에 대한 평가는 각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포함하는 기록물의 다른 문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문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서의 저자, 작성목적, 관련된 권한의 범위, 분류와 문서화의 기준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업무추진에 따른 문서화 작업은 본래의 질서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관리전문가의 임무는 가능성의 한도 내에서 본래의 질서를 재구성하고 문서화 과정의 수정, 해체 그리고 새로운 재구성의 동기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들을 발견할 가능성은 재정리된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목록집을 작성할 때 비로소 크게 증가한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방안을 다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일련의 key-word 들과 유사어들로 인한 궁극적인 관계들로 대변되는 다양한 해법으로 자료들을 해체하고 재취합한다면 연구자에게 필요한 문서들을 구별해 낼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물론 각 정보들의 의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연구자에게 있어서 연구의 첫 단계는 목록상의 작업인데, 문서와 관련하여 정리하고 목록화하는 이 작업은 실제의 기록물보다는 목록상으로 자료들을 해체하고 여러 개로 재취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전산화의 고비용과 전통문서, 즉 역사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수많은 자료들과 문서정보학센터의 설립에 대한 무차별적인 열정보다는 보다

신중한 개입정책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먼저 역사기록물에 정보학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업무기록물에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것²⁴⁾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 즉 역사기록물에 정보학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대상이 한 장소 이상의 여러 보존기관에 분산, 관리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조 수단들로 국한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동질(또는 동종)의 자료들을 코드화하는데 필요한 목록집들의 작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요약공문이나 문서의 내용에 관한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상기록물이 재정리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료들을 비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실될 수 있다. 즉 만약 기록물 시리즈의 전체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기준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대장의 중간자료와 최종 자료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혼합해서 삽입한다면, 연구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만약 보고서, 요약문, 서한, 증언문의 경우, 이러한 문서들에서 문서의 저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문서의 수신인에 대한 강조나 언급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문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기대감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전자장치는 문서를 발견하는 데는 유익할 것이지만, 원본에 대한 판독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더구나 분명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key-word 로는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연구자가 채택한 방식에 따라 연역이나 추정의 논리적인 절차로 찾아질 수 있는 다른 문서들에 대한 판독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형의 문서인 경우, 연구의 행복한 귀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대부분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전자장치의 사용이 전통적인 수단들로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의 문서들과 자료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통적인 수단들로는 열람이 쉽지 않은 기록물을 위한 적합한 연구통로를 모색하는 데는 전자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최종 문서들이나 공식적인 성격의 등록물과 같이, 형태상으로는 동질적이거나 내용적으로

24) 다시 말하면 기관이 자체의 필요에 따라 채택한 시스템에 입력할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사전에 마련한 전자장치로 업무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는 이질적이며 연속성이 보장된 기록물 시리즈나 또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자료들 자체의 조직력이 뛰어난 문서들로 구성된 시리즈가 전자장치의 적용으로 효율적인 열람과 연구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시도는 잡록집(Miscelanea)이나 서술력이 뛰어난 목록집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부의 체계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성격의 문서들이 혼합되어 있는 기록물시리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통문서, 즉 역사기록물에 적용된 정보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제적인 목적에서 기록물에 접근하거나 구체적인 문서를 발견하기 위해 관련기록물 전체나 유사한 업무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열람해야만 하는 초심자들의 연구를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열람실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숙련된 연구자의 경우에 사정은 보다 복잡해진다. 문서의 유형과 각 기록물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색인목록에 비해 더욱 신속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서요약 목록 및 가이드와 같은 보조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이 학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의 문제는 구체적인 문서를 발견하거나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확보할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상적인 연구자는 사회학 연구나 수량적 연구와 같이 그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해전술식의 열람보다는 기록물가이드와 기록물 목록집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필수적인 기록물만을 신속하게 찾아내며 계속해서 가정과 증명에 기초한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관심을 점차 다른 문서들로 확대하여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한다. 연구자는 전통적인 방식들로 모든 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기록물에 전자장치가 도입되었다면 기록관리전문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기록관리전문가는 전자장치체계에 수록될 정보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가능한 해답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외교 문서들과 같이 동질적인 시리즈의 기록물이라면 기록관리전문가의 선택에는 여지가 별로 없지만, 다른 문서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수발 문서들과 같이 중요한 정보 자료들에 대한 우발적인 선택은 기록관리전문가의

주관적인 선택에 많은 여지를 제공한다. 전자 장비들이 전통적인 연구 수단들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전문화된 자질이 필요하다. 목적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합리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수많은 정보 자료들로 형성된 혼란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선별과 선택의 현명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기록물에 적용된 전자 장비들의 경우, 분석방식은 달라지지만 자료들에 대한 비평적 평가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공사 기관들이 여러 행정 분야에서 수많은 정보 자료들의 관리를 위해 이미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보학 기술은 문서작성과 전문용어 그리고 도표와 같은 성격들에 있어 진정한 혁명을 의미한다. 마그네틱(magnetic) 도구에 작성된 기록물의 기본단위는 정보 자료이다.²⁵⁾ 이들은 목록카드 형태, 설문지 형태 혹은 많은 양의 정보자료를 포함하는 서식의 형태, ‘yes’나 ‘no’ 또는 이미 설정된 가정의 숫자로 표시되는 다양한 답의 형태를 가지는 매개 문서들을 통해서 삽입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장들, 주관적인 생각, 하나의 체계에 자료들의 삽입을 불확실하고 어렵게 만드는 어휘들은 제거되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 도구들에 정보 자료들을 곧바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정보 자료들에 대한 강독은 전자도표(tabulato), 보존되어 있는 종이문서 또는 비디오 기기 또는 장치(video-terminali)로 가능하다.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된 기록물도 있는데, 이들은 파일별로 그리고 파일들의 내부에서는 records 즉 한 대상과 관련하여 등록된 수많은 단위(문서)들로 수집된다. 기록물의 형태변화는 정보 자료들이 곧바로 전자문서로 작성된 후에 미리 설정된 질서에 따라 오직 전자체계에서만 알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을 때 보다 급진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생산당시에 전자문서로 직접 작성된 문서들의 경우 전통기록물 시리즈의 연속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요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재배치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정보 자료들이 성립하는데, 그

25) 물론, 정보의 micro-level이 분석적인 만큼 “the rule is that while you can never disaggregate summarizes data(down form group data to individual data), you can always aggregate micro-level data to the disires summary level. Thus, unaggregates micro-level data has the greatest potential for further computer processing” 한 이후 복합적인 재처리작업의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진다. cfr. C.M. Dollar, “Appraising Machine-Readable Records”, The American Archivist, vol. 41, n. 4, October 1978, pp. 424-425.

럼에도 이 모든 것이 정보 자료들을 수집하고 열람의 수단(key) 들을 미리 설정한 사람의 의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보장치기술의 변화, 정보자료에 대한 다양한 강독방식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단위로부터 각각 독립된 위치를 구성하는 정보 자료들은 기록관리전문가에게 자료의 활용이나 비평적 분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각 정보자료는, 구체적인 역사의 연속차원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다른 정보 자료들과의 관계망이 설정된 순간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정보시스템은 정보 자료들을 파괴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정보 자료들을 해체하고 재취합하는 작업이 얼마나 동시에 진행되는가에 의해서 그 효율성이 결정되는 일종의 유동관계시스템이다. 작업자가 기기에 요청하는 정보 자료들의 실질적인 취합은 종종 동일한 정보 자료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한 이론적 귀결(*ipotetiche sequenze astratte*)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자료들은 실제로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는 유동적 실체들이다.

보존분야에 있어서 준비 문서들과 전자도표(*tabulato*)들은 전통적으로 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문서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비디오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장치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보존의 개념, 즉 정보 자료들의 결정화는 유동성을 통해서 기능성이 실현되는 기록물의 유형과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보존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이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정보 자료들의 궁극적인 보존을 의미한다.²⁶⁾ 그리고 만약 모든 프로그램의 수정내용이 기록되었거나 보존되지 않았다면 과거에 수록되었던 정보 자료들을 재사용할 가능성은 시간차이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만약 경제성이 고려된 현실에서 동일한 전자 장치들을 이용한다면 이전 정보 자료들의 모든 흔적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 진보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전자 장치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장비들 그리고 정보 자료들을 해독하기 위한 코드들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장치에 과거의

26)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유형분석에서 모든 도구 자료들(또는 *temporary data*)은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모두 삭제되어지며, 아울러 “furthermore, the problems of provenance could become insoluble, since there would be no record of data transactions to reveal the sources of data”: cfr. C. M. Dollar, “Appraising Machine-Readable Records”, *The American Archivist*, vol. 41, n. 4, October 1978, p. 429.

정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오늘날 이러한 준비 문서들의 유형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보존되어야 하는 '역사정보자료'의 개별화를 위한 법 규정은 아직도 연구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들에는 또한 아직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록관리전문사의 양성 예산의 문제 그리고 여러 성격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추가된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역사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자료들을 위해서도 기관의 조직, 목적, 실질적인 행위의 양식들 그리고 역사기억의 조직을 위한 기준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본인은 기록물이 생산당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면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가치의 상실과 획득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실과 획득의 이분법적 순환이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 즉 활용에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가치의 상실과 획득이 기록물에 대한 관점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사실상 기록물에 대한 활용에 나름대로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에서 기록관리학의 관점이 기록물에 대한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활용의 구체적인 모양새를 제공하는 key-word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불과 얼마 전부터 금세기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기록물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영역에까지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금융 분야를 비롯한 많은 사기업들과 심지어 국립의 전문보존기관들도 정보시스템의 이름으로 'enter의 기적'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사실상 정보기술의 도입을 반대할 명백한 논리가 준비되어 있다거나 굳이 반대할 확실한 명분도 없어 보인다. 다만 본 논문을 통해 한 마디 한다면 "최신의 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그 화려함과 편리

함 만큼이나 위험 또는 치명적인 결함에 의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신봉과 그에 따른 관련 사례들, 또
는 회복불능의 현상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본인은 아래의 인용을 통해 다양한 활용에 앞서거나 적어도 병행의 차
원에서 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학적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대신하
려고 한다.

“기록물의 활용과 그 목적 실현의 구체적인 창구인 열람의 문제는 구체적인 문
서나 정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차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주제나 관심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
는데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소기의 목적은 내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복
원된 상태로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에 노력하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양성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B. Croce, *La storia come pensiero e come azione*, Bari: Laterza, 1966.
- L. Febvre, *Problemi di metodo storico*, Torino: Einaudi 1976.
- A. D'Addario, *Lezioni di archivistica*, Bari: Adriatica editrice, 1972.
- C. M. Dollar, “Appraising machine-Readable Records”, *The America Archivist*, vol. 41, n. 4,
October 1978.
- F. Chabod, *lezioni di metodo storico*, Bari: Laterza, 1969.
- P. Carucci, “Lo scarto come elemento qualificante per le fonti della storiografia”, *Rassegna
degli Archivi di Stato*, XXXV/1-2-3(1975)
- G. Costamagna, *Il notaio a Genova tra prestigio e potere*, Roma: Consiglio nazionale del
notariato, 1970.
- R. De Felice, *L'archivio moderno n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Roma: Edizioni dell'ANAI,
1969.
- P. Carucci, *Documento contemporaneo. Diplomatica e critica di edizione*, Roma: La NIS, 1987.
- P. Carucci, *Fonti archivistiche. Ordinamento e conservazione*, Roma: La NIS, 1983

- G. Cecchini, "La legislazione archivistica del Comune di Siena", *Notizie degli Archivi toscani*, 258n.
- G. Cencetti, "Archivio, progetto di voce per vocabolario di Ch. Sanaran", *Archivi*, 1983
- Duranti Luciana, "Diplomatics; new uses for an old science", *Archivaria*, nn. 28-33.
- E. Lodolini, "Studi archivistici italiani nell'Europa comunitaria", *Universita' Ricerca*, 1994, 388n
- A. Panella, *Conservazione dei fondi membranacei*, NAS, XVII, 1957,
- A. Panella, *Francesco Bonaini*, RAS, XVII, 1957.
- A. Panella, *In margine alla relazione del 1980 per il riordinamento degli AS*, 1937, 45n
- Pascu Stefano, "La Scuola di Archivistica, paleografia e diplomatica romana", *Archivi*, IX, 1942.